

배포 일시	2022. 8. 11.(목)		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김연희 (044-201-4987)
	건축안전과	담당자	사무관 이지연 (044-201-4989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 방안 강구

< 보도내용('22. 8. 11. 서울신문) >

- ◆ 스프링클러 급한데...원장은 전과자 될 판
 - 영세 어린이집 연내 설치 비상
 - 원아 급감에 운영난... 설치비 부담
국토부는 “기한 넘기면 징역” 압박
최대 2600만원 보조금 안내 없어
“기간 연장... 보조금 시스템 개선을”

<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개요 >

-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1일 「건축물관리법」을 제정·시행하면서,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.
-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써,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*입니다.

* 피난약자 이용시설 :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
다중이용업소 : 고시원, 목욕장, 산후조리원, 학원

**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,000㎡ 이하인 경우에 한함

-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**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,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가 1/3, 지자체가 1/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**
 -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**사업 착수단계에서 선급금 70%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, 보강 완료 시에 잔여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.**
- 다만, 이 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은 **국민 안전을 위하여 기한을 두고 의무 시행하는 사항이므로, 「건축물관리법」 제51조제1항제8호와 제52조제6호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.**
 - *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- *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< 보도내용 관련 >

- 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‘기한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’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 압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 -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**정부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** 해당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 또한 정보의 부재로 피해를 보는 건축물 관리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, 공문 발송,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② 사업비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 -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**보조금 보조사업**으로써, 다른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(기획재정부)가 이미 마련한 「e나라도움」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.

< 향후 추진계획 >

-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·예산 및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정보 부족 및 불편함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- 우선, 사업 신청 및 절차,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안내를 건축물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화재안전성능보강 법정 기한이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경제·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와 겹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